



# 농자재산업 발전 · 식품안전관리 위해 제도개선 추진할 터



이 광 해\_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한**해를 새로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누구나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뜻 깊게 보내리라 결심을 해 본다. 또한 기대하는 설레임이 크기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 보니 지난 해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정말 시련이 많았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봄부터 냉해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재배과정에서 많은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확기인 가을에는 잣은 강우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수확을 앞둔 농업인에게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로 소득이 감소하는 아픔을 주었으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상승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농약업계 또한 어려움이 없었

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인 것처럼 농약은 농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재이기 때문에 농업이 어려우면 농약업계도 함께 어려운 한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도 농약관리 업무는 크게 발전하여 연말 현재 등록업체는 106개 업체, 등록된 농약 품목수는 1,431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업무성과로는 유럽연합 및 미국에서 발표한 사용부적합 농약 중 우리나라에서 등록·사용되고 있는 농약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19종을 등록 취소하고, 23종을 행정처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해우려 농약에 대하여는 농작업자 노출량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농업인의 건강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지난 4월에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

회에서 통과되어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농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재들에 대하여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독성 농약에 대하여는 디메톤에스메틸유제 등 3품목을 등록취소 하는 한편, 연간 출하물량을 종전보다 37% 감축하여 농작업자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인터넷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판매업체 8개소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불법 농자재 유통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동으로 단속을 실시, 유통관리의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 인터넷 및 청소년 판매금지, 농약판매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규정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농자재산업 발전과 식품안전관리의 양면성이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즉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중인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기로 한다.

##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동안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으로 구분되던 농약이 화학농약과 천연식물보호제로 구분했다. ‘천연식물보호제’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산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일컬으며 이들 농약을 농업인이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새로운 병해충이 국내에 자주 발생됨에 따라 선진국과 같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긴급 농약등록제도가 필요하여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도 일정한 허가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받은 자가 수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농약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을 할 수 있는 농약시험연구기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 규정에 바탕을 둔 지정근거를 법률에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약은 농업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이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인명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고독성 농약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약에 대한 통신판매나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이 함부로 농약을 살 수 없도록 청소년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부정농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해 유통시켜 이를 사용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농약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농약 취급자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

**올해에는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농약 품질관리, 원제 수입선 관리, 제조사설 등 제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품질검사는 단순 성분검사는 축소하고 민원농약, 수입품목 등 품질관리 취약품목 위주로 검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농약의 등록관리**

고독성 농약은 지난 해 3품목이 등록취소되어 12품목으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검역용 등을 제외한 9종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값이 싸고, 효과가 뛰어나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 품목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생산 농업인의 건강보호라는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 올해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검역용 및 산림방제용을 제외한 9품목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품목 적용대상 동일화’ 지침에 대하여는 법적 규정과 배치되어 폐지를 업계에 이미 통보했으나, 업계에서는 지침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최초 등록후 10년 경과 품목의 등록시 제출자료 면제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관련 정보와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가칭 ‘농약관리 Q&A’ 책자를 제작 배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책자 발간에 앞서 수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동안 궁금해 왔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평상시 궁금한 점 등을 보내주시면 개정판 편집시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이다.

특히 농약 등록신청을 위해 제출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토 평가한 결과를 종합보고서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심의한 결과와 신청부터 최종 결론까지를 알기쉽게 작성할 예정이며,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심사 및 평가한 사항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등록신청 회사는 모든 성적에 대한 요약서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농약 시험연구기관 관리 강화**

농약 등록에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시험성적서이다. 국가에서 농약의 품목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여 고시하던 때에는 민간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현재의 등록제도에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하는 시험성적서가 등록의 기초자료이므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즉, 등록 검토과정의 대부분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의 생산은 농약 등록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시험기관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청에서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시험기관의 지정평가, 사후 관리, 행정처분 등의 사항은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규정에서 마련하여 시험연구기관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의 개선과 사후관리의 강화로 부실한 시험연구기관은 퇴출하고, 우수한 시험연구기관은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종합관리를 통해 시험연구 기관 및 시험성적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이 등록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험연구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 농약 유통 관리

지속적인 유통 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농약의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검증이 안된 자재이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통 관리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청의 특

별사법경찰권을 적극 활용하여 밀수입 농약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 관세청 등과 협조체계로 직접 수사하여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농약의 인터넷판매업소, 원예자재판매업소, 화원 등에 대한 상시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밀수입 농약 취급 등 불법 농약의 유통근절을 위해 우리 청에서는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불량농약 신고센터는 농촌진흥청(031-295-8005)과 해당 시·군·구의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센터이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농약·비료의 밀제조 및 유통판매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유통판매행위, 비료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유통판매행위, 표시 사항을 위·변조해 허위 표시를 한 농약·비료를 유통 판매행위 등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 위반사항이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끝으로 올해에는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농약 품질관리, 원제 수입선 관리, 제조시설 등 제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품질검사는 단순 성분검사는 축소하고 민원농약, 수입품목 등 품질관리 취약 품목 위주로 검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약 안전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이상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 농약에 대한 관리문제로 지적받지 않고 농약의 부정적인 인식을 ‘농약은 농업에 꼭 필요한 농자재’로 거듭나는 새로운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해를 기원해 본다.